

# CREDO

MAGAZINE



THE  
WORLD  
ASKS  
AND  
CREDO  
ANSWERS

세상이 묻고  
크레도가 답하다

VOL.3 DECEMBER 2021



## 사단법인 크레도에서 제1기 크레도 펠로우를 모집합니다.

### 사단법인 크레도는

개인의 헌법적 기본권과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젊은 인재들**을 모집합니다.

### 크레도 펠로우 CREDO FELLOW

- 사단법인 크레도에서 함께 하는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하며 토론합니다.
- 연구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이를 소통할 수 있도록 보고서, 칼럼, 동영상 등으로 만드는 작업에 동참합니다.

### 제1기 크레도 펠로우의 연구주제

- 국내외 낙태관련 케이스 분석- 페미니즘이 낙태합법화에 미친 영향
-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개인의 자유권 침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 조사  
-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침해 사례 연구

### 제1기 크레도 펠로우 CREDO FELLOW 지원조건

- **기간** 2022년 1- 2월(2개월간)
- **장소** 서울시 서초구
- **모집인원** 5명 내외
- **지원서류** 이력서 및 지원이유, 지원영역을 기술한 자기 소개서 제출 (2021년 12월 15일까지)
- **연구조건** 주 2회 대면 토론회 참석 및 발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조정)
- **특전** 1인당 30만원의 연구비 지원 및 크레도 펠로우 증명서 발급

지원서는 아래의 이메일로 송부바랍니다.

[jsonnie@hotmail.com](mailto:jsonnie@hotmail.com)



무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 2022 청춘 특세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청춘,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청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청춘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로 초대합니다!

**대상** 18세 이상의 청춘들을 위한 대면모임

**인원** 선착순 30명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

**신청기한 및 수강료 납부기한** 2022년 12월 12일까지

**장소** 남부순환로 333길 20 산지빌딩 1층 라 몽타뉴 카페  
3호선 남부터미널역 4번출구에서 도보 10분

## 필수 과목 | 성경적 세계관 배우기

수강료 15만원  
주 강사 정소영 미국 변호사  
주 교재 『생각의 길을 찾는 세계관 매뉴얼 1권』 정소영 지음

|             |                                         |
|-------------|-----------------------------------------|
| 1주차 (12/16) | 오리엔테이션 & 세계관이란?                         |
| 2주차 (12/23) | 성경적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
| 3주차 (12/30) |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이슬람                      |
| 4주차 (1/6)   | 세계관이 학문에 미친 영향 및 대학 신입생을 위한 조언: 한예정 변호사 |

**신청 링크** <https://forms.gle/LxqM6Mzvdu3zKtK47>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202-376686 렉스 컨설팅, 정소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20만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7만원 할인)

**문의** spaul.academy@gmail.com

## 선택 과목 |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내기

수강료 회당 2만원

|            |                                                |
|------------|------------------------------------------------|
| 1주차 (1/13) | 성경적 성가치관과 결혼<br>최혜정 - 제너레이션 유니온 대표             |
| 2주차 (1/20) | 성경적 재정<br>황수현 - 공인회계사, 미국 변호사                  |
| 3주차 (1/27) | 성경적 일과 소명<br>이광배 - (주) 어헤드원 대표, 『프레임 수업』 저자    |
| 4주차 (2/3)  | 목상과 기도<br>이연임 - 리얼워크 이사,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 공저자 |
| 5주차 (2/10) | 통일과 대한민국의 소명<br>손재욱 - 아브라함 이주공사 대표             |
| 6주차 (2/17) | 크리스천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파티                             |

**주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 사단법인 크레도



## CONTENTS

### CREDO UPDATE 006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구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염려하다?  
서구 진보주의자들의 사회적 실험이 가져 올 참상 경고  
정소영 크레도 사무총장 007
- 백신 접종과 백신 패스가 가진 윤리적 문제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009

### CREDO SIGNATURE 012

- 위기상황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영국의 보건의료행정  
이진영 법학박사, 크레도 객원연구원 013
- 법무부의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한 유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022

### CREDO NORTH KOREA 026

-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제 사회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으로써 무력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한예정 크레도 상근변호사 027
- 탈북민 수기 시리즈 4 - 돌격대에 바친 나의 청춘  
김보빈 작가 033

### CREDO INTERVIEW 041

-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042

### CREDO CULTURE 048

- 크리스마스에는 “나홀로 집에(Home Alone)”  
정희재 음악감독 049
-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작품들  
최지인 Choi Contemporary Art 대표 051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다들 별로 없으셨습니까?

2019년 말에 시작되어 이제는 끝이 나기가 싶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가 모두 코로나19는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앞의 상황은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The Show Must Go On!”

12월 크레도 매거진에서 관심있게 보셨으면 하는 내용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다이 토론 클럽 기조연설에 대한 글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었던 소비에트 연방(구 소련)의 경험을 나누면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 실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실험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정

체성과 영적, 도덕적 기준을 흔드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에서 혁명을 통해 사회구조의 해체와 변혁을 꾀했던 시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야기 하면서 인류가 다시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유물론을 국가의 사상적 근거로 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전통에 서 있는 서구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염려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 비단 서구 사회에만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최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전역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인 국방부의 항소를 금지시킨 일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는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글도 이번 달 크레도 매거진에서 다루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단법인 크레도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CREDO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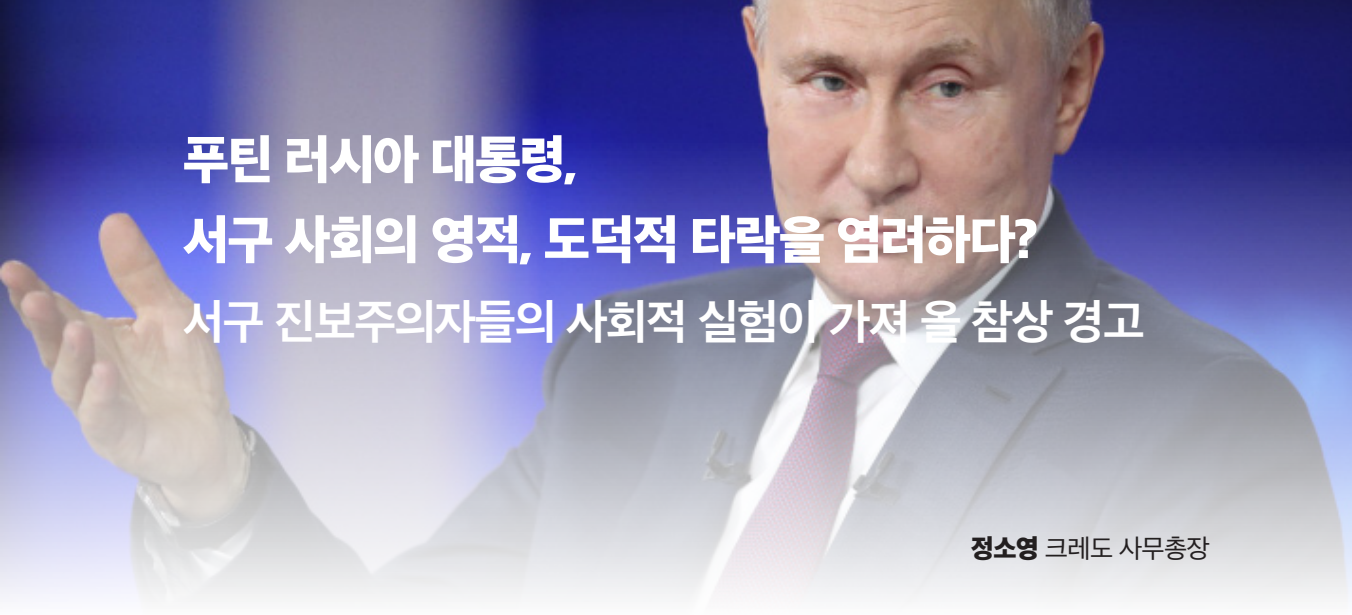
---

**“세상이 묻고 크레도가 답하다.”**

최근 이슈들을 크레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구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염려하다? 서구 진보주의자들의 사회적 실험이 가져 올 참상 경고

정소영 크레도 사무총장

2021년 10월 18일부터 21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 클럽 Valdai Discussion Club 제 18차 연차총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서구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염려하는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발다이 토론 클럽의 주제는 ‘21세기의 세계적인 변화: 개인, 가치 및 국가’였습니다. 발다이 토론 클럽은 2004년에 설립된 모스크바 기반의 싱크탱크로 해마다 전세계 유수의 대학과 정책기관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차원과 규모이며 환경, 기후 변화, 안전, 경제적 불평등, 식량 위기, 기술 혁명 등으로 새로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적 윤리와 도덕의 파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서구 일부 사람들의 자국 역사에 대한 공격, 소수를 위한 다수를 향한 역차별, 어머니, 아버지, 가족 및 심지어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포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갱신을 향한 길의 이정표라고 믿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이미 시도해 본 것이었다고 푸틴 대통령은 말합니다. 러시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독단에 의거하여

기존의 방식과 관습을 바꾸고, 정치 경제뿐 아니라 인간 도덕의 개념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까지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오래된 가치, 종교적 관계의 파괴, 가족에 대한 거부. 이 모든 것이 당시에 유행했고 1920년대에는 소위 새로운 의식을 만들고 가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사람들이 인간 개조를 시도했었지만 이 모든 시도들은 러시아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실패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 1900년대 러시아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에 대한 역차별, 왕따 문화 **Cancel Culture**, 젠더 이데올로기 **Gender Ideology**,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 등은 문화막시즘의 일종으로써 과거 소련 시대의 러시아에서 혁명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며 시도해 본 것들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무시한 사회적 실험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인간 존재의 물질적 기초뿐 아니라 영적 기초까지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도덕적 잔해를 남긴다고도 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의 대통령이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서구 사회에 대하여 유물론과 공산주의가 초래할 인간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염려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출처 [Valdaiclub.com](http://Valdaiclub.com)

# 백신 접종과 백신 패스가 가진 윤리적 문제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수개월의 짧은 임상시험을 통해 긴급 승인한 것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작용 이외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는 수년간의 통계가 축적되어야만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의학적 근거와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21년 10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849명이다. 이중 50세 미만의 사망자는 80명(전체 사망자의 2.82% 로써 40대 43명, 30대 25명, 20대 12명, 20세 이하 0명)에 불과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젊은 여성들에게 혈전증을 발생시키고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30세 미만의 남자에게서 심근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층과 청소년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조사들의 이해상충(COI, 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 향후 백신 접종은 50대 이후 연령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99.5%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고 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도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지 않다면 호들갑을 떨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중증 환자수 > 사망자수 > 새로운 확진자 수의 순서로 중요도를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치명율은 40대 0.07%, 30대 0.04%, 20대 0.02%, 20세미만 0%



다. 독감 사망률 0.1%와 비교해 볼 때, 독감보다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50세 미만에서는 감염이 돼도 무증상이나 경증 상태를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고3 수험생 접종으로 접종 순위가 밀린 50대 연령층에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의학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 50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 접종은 고위험군인 50세 이상의 연령층에 집중해야 한다.

## 일방적인 백신 접종 강요는 폭력이 될 수 있다

2021년 10월 30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누계는 1,177건(아스트라제네카 496, 화이자 606, 모더나 61, 안센 14)이 발생했다.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숫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백신의 통계와 추이를 분석해 볼 때 현재 백신의 효과는 집단면역을 담보할 수 없다. 만약 항체형성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으며, 안정성이 있는 백신이 준비되었는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한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젊은층(40대 이하)에게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 백신패스의 문제점

특히 백신패스는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이다.

백신의 예방효과는 접종 후 5개월 후 모더나 92% → 64%, 화이자 91% → 50% 안센 88% → 3%로 매달 떨어지고 있다. 누구라도 감염될 수도 있고, 감염전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백신패스보다는 백신에 대한 불신감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백신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국민들의 판단을 더 이상 흐려 놓으면 안 될 것이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면서 부득이하게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줄여 나간다. 의학은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밝혀진 만큼만 따라가면 된다. 밝혀진 만큼의 정보를 충분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백신을 맞지 못했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낙인 찍는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경직된 정책보다는 이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성숙한 정책이 필요하다.

##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정치적 욕심으로 윤리적 문제를 간과한 백신 접종과 백신패스 정책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기 위해 **첫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 벗고 실외에서 쓰는 이상한 마스크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방역기준도 마스크를 착용 시 실내외 모두 1미터 거리두기로 통일해야 한다. **둘째, 백신 접종은 집단면역 달성이 아닌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고위험층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독감 치료제와 같은 치료약이 나와 코로나가 독감수준의 질병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인간은 아직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통계와 임상결과가 알려주는 만큼 조금씩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가야 한다. 더 이상 비윤리적인 정치적 판단이 국민의 삶과 인권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CREDO

## *Signature*

---

사단법인 크레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사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위기상황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 영국의 보건의료행정

이진영 법학박사, 크레도 객원연구원

\* 본 기고문은 2021년 상반기 발표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발췌하여 게재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 영국의 보건의료거버넌스와 행정조직

지난 호에서 코로나19 관련 영국의 공중보건의료 관련법제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의 보건의료거버넌스와 행정조직이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영국 보건의료조직과 관련하여 정치적 결정에 따라 수없이 개혁이 이어졌으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다시금 ‘공공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조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1. 개관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에는 직접 재원을 배분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는 포괄보조금을 교부하여 스스로 정책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였다.<sup>1</sup> 그리고 영국은 공

---

<sup>1</sup> Cylus, J., Richardson, E., Findley L, Longley M, O'Neill C, Steel D., United Kingdom: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015.

적 자금을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 책임을 보건사회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에 부여하고, 영국의 보건, 사회보장 부분의 정책 수립에 주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한편 잉글랜드에 국한하여 보면 NHS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2012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HSCA 2012**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NHS England’에 있다. 그리고 영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021년 4월 영국 보건보안국 **UK Health Security Agency**을 새로 출범하였다. 영국 보건보안국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잉글랜드 공중보건국 **Public Health England**의 역할 논의도 필요하다. 이하 공적 의료 분야 관련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NHS England & NHS Improvement

### 1) NHS 조직 관련 법률 제·개정

NHS와 관련한 기본법은 「1977년 국민건강서비스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NHS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수없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변경되어 왔다. 특히 「2001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1** 이후 이어진 여러 개정 과정을 통해 조직 및 운영체계의 변동이 컸다.

「2001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1**은 NHS의 성과를 향상시켜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의사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환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법 시행으로 2002년 28개의 보건전략국 **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과 4개의 보건 및 사회보장국장이 신설되었다.<sup>2</sup> 이어 「2003년 건강 및 사회보장(지역 건강과 기준)법」 **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 2003**에 따라 ‘NHS Foundation Trusts’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의사 규제 기관 및 사회보장 부문에도 이와 동등한 내용의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에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후 「2008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을 통해 NHS의 독립적 이사회 형성과 환자의 선택권 강

2 UK Public General Act 2001 c.15, Explanatory Notes.

화, NHS 행정 비용 감축이 시도되었다.

특히 「2012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sup>3</sup>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HSCA 2012**은 NHS 제도 역사상 가장 전면적인 변화로 파악되는데 이 법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1차 진료 트러스트 **Primary Care Trusts, PCT**를 대체하는 임상전문가 주도의 커미셔닝 구성, 둘째, 민간 부문의 서비스 영역 확대, 셋째,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 개혁의 큰 3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임상전문가 주도의 커미셔닝 구성’ 배경을 살펴보면, 1차 진료 트러스트는 1차 의료기관(GPs 중심)과 2차 의료기관(주로 NHS 병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와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1차 진료 트러스트는 환자 대신 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기획, 재정관리, 의료이용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의사결정은 임상전문가가 아닌 경영인들이 주로 하였으며, 임상적 이유보다는 재정적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조정하게 되어, 여러 국민들은 진료에 대한 불만과 함께 1차 진료 트러스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한편 1차 진료 트러스트의 상급기관인 보건전략국 **Strategic Health Authority**은 주로 보건부와 NHS 서비스 간의 매개역할을 맡았으며, 주로 NHS 서비스에 대한 전략 방향과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 잉글랜드 지역에 총 10개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 개혁으로 인해 보건전략국은 보건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공공 기관의 형태를 가진 NHS Commissioning Board(현재의 ‘NHS England’)로 대체되었다.<sup>3</sup> 즉 국가의 NHS에 대한 책임을 감축하는 형식의 개혁이었다.

## 2) 역할

NHS England는 NHS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을 주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의료 서비스를 위탁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을 임상 커미셔닝 그룹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sup>4</sup>에 배분할 책임을 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그리

<sup>3</sup> 이정희, “영국 NHS 개혁과 쟁점 및 논란”, 『국제노동브리프』(한국노동연구원, 2011), 제9권 제5호, 57면.

<sup>4</sup> 지역단위 의사들의 집단인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CCGs)가 구성되고, NHS는 각 CCGs에게 재원을 배분하면 CCG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하여 NHS England의 법적 명칭은 ‘NHS 커미셔닝 위원회’<sup>5</sup>The National Health Service Commissioning Board이다. 그리고 NHS England에 대한 위임사항은 예산뿐만 아니라 NHS England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모든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NHS의 방향을 정하고, NHS가 의회와 대중에게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한다. 보건사회부는 이와 관련한 NHS England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매년 명시한다.<sup>5</sup> 한편 공동 지도부 산하에 함께 일하는 NHS Improvement는 트러스트 재정 관리에 책임을 진다.<sup>6</sup>

### 3) 위기 대응 관련 NHS England의 역할

위기 대응과 관련한 NHS England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 건강 및 사회 보장법」에 의해 개정된 「2004년 민간 비상사태 법」과 「2006년 NHS 법」은 NHS England와 NHS 조직, NHS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안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하였다. 2017년 NHS는 건강 또는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감시하고, 지시 및 조율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보건사회부, NHS England 지역 당국 및 커미셔닝 운영 책임자 팀<sup>7</sup> Director of Commissioning Operations Teams, 공중보건국(PHE) 및 기타 협력 기구와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NHS의 역할 자체는 ‘보충적’이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정하는 데 있다. 방향 제시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은 NHS England 최고 책임자에게 있고, 최고 책임자가 부재하다면, NHS England 위기책임관<sup>8</sup>Accountable Emergency Officer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NHS 잉글랜드 최고 책임자는 대부분의 위기대응 사안을 위기책임관에게 NHS의 대응을 감독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sup>5</sup>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는 전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하는 단일 부서 계획(a Single Departmental Plan)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사회부의 단일부서계획과 보건의료의 의무(mandate) 및 소관사항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정한 것이다.

<sup>6</sup>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The Government's revised 2019-20 Accountability Framework with NHS England and NHS Improvement, March 2020, p. 8.



#### 4) 2019년 NHS 개혁안

NHS England에서는 2019년 법률개정안을 포함한 NHS 장기계획안을 제안하였다.<sup>7</sup> 이는 NHS 기관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실체적인 문제를 기초로 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함이다. 제안의 이유는 환자에 대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해 지역 NHS 기관들이 보다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면서, 조달, 가격 책정 및 합병에 대한 규칙과 프로세스가 의료 통합 과정을 어렵게 한다고 보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2012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 제75조<sup>9</sup>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0</sup> 즉 NHS England는 규제를 통한 경쟁 심화가 오히려 NHS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했음을 지적하여, 입법 개선을 통해 NHS 장기계획에 포함된 주요 서비스를 통합하여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했다.

<sup>7</sup> NHS England Strategy & Innovation Directorate and NHS Improvement Strategy Directorate, Implementing the NHS Long Term Plan: Proposal for possible changes to legislation, 2019.

<sup>8</sup> NHS England Strategy & Innovation Directorate and NHS Improvement Strategy Directorate, 앞의 보고서 (주 17), p. 4.

<sup>9</sup> 75. 조달, 환자 선택 및 경쟁에 대한 요구 사항

(1) 규정은 NHS의 목적상 의료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건의위원회와 CCQ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a) 조달과 관련하여 모범 사례를 준수한다.

(b) NHS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치료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가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한다.

(c)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경쟁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본 조에 따른 규정에 의해 부과된 요구사항은 용역의 귀속 대가의 가치가 재화에 귀속되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만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약정에 적용된다.

(3) 본 조에 따른 규정은 특히 다음과 관련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a)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 입찰

(b)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이해관계 간의 갈등 관리.

(4) 규정은 규정된 서술의 준비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부과된 요건 또는 규정된 요건을 제공할 수 있다.

<sup>10</sup> 동법 제75조와 2015년 공공 계약 규정에 따라 지역의 CCG는 60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치료 계약을 입찰을 통해 집행해야만 한다.



2020년 8월 조직 개편과 동시에 PHE는 통폐합을 겪었다.<sup>13</sup>

#### 4. 코로나19 대응 관련 2012년 개혁 논란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012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에 의한 개혁이 실패한 것임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2012년 개혁으로 인해 NHS의 일관되고 통합된 시스템이 해체되어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2011년 조직 개편 및 개혁 당시 경제적 재정위기 상황에서 공적 의료제도인 NHS 역시 재정 절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연합정부의 원칙 아래 정부 재정의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는 NHS 예산 역시 2015년까지 35조에 이르는 비용 절감 압박을 받았다.<sup>14</sup> 이에 의료 상품화 및 시장 경쟁 강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게 함으로써 NHS의 공공성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전염성 질병 통제 및 지역사회 통제팀 컨설턴트가 감소하면서 지역 당국의 강력한 대응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역병리학 및 바이러스학 서비스는 중앙 집중화 되고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으며, 지역에는 영리 및 비영리 실험실이 단편적으로 혼재하면서,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지방 수준에서의 통제 역량이 부족한데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한 것이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부는 의료 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점유율도 줄였다. NHS 병상 수는 2012년에서 2019년 사이 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민간병원의 병상을 큰 비용을 들여 임대해야 했다. 런던 퀸메리대학교 공중보건센터 소장인 데이비드 맥코이 David McCoy 교수는 NHS가 협력, 연민, 직업윤리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

<sup>13</sup> PHE의 건강 개선, 예방 및 공공 의료 기능은 목적, 책임 및 영향의 명확성을 위해 보건사회부에 건강증진실로 이전하고, 건강 안보 및 감염병 대응 관련 기능은 영국 보건보안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로 통합되었다.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Policy paper, Transforming the public health system: reforming the public health system for the challenges of our times, 2021. 3. 29.

<sup>14</sup> 김용수,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개혁 논의, HIRA 6권 1호, 2012, 56면.

을 위해 적절히 관리되는 공공서비스로 복원될 필요가 있고, 「2012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다.<sup>15</sup>

## 5. 영국 보건보안국 (UK Health Security Agency)

2020년 8월 18일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중보건 보호와 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Protection, NIHP**을 새로 출범시키고, 테스트 능력 및 대규모 접촉자 추적 시스템 구축, 합동 바이오안보 센터 신설을 통해 분석 능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PHE가 위기 상황 대처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한 자체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국립보건원은 2021년 4월 1일 영국 보건보안국 **UK Health Security Agency**로 재편되면서, 생물학적 무기, 모든 종류의 전염병 및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협에 “총체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강 보안 및 건강 개선의 두 가지 기능은 지방 정부 및 NHS와의 중요한 관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공중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즉 영국 보건보안국은 예방, 탐지, 분석, 대응, 협력의 5개 핵심 영역에 기능을 하게 된다.

## 6. 시사점

영국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30년간의 투자 부진을 만회하고 의료의 질, 시의 적절성, 대응력 향상의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2011년 커먼웰스펀드의 통계에 따르면 의료의 질 부문에서 최고로 뽑히기도 하였다. 일견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NHS 제도 자체는 복지국가의 장점으로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 당시 모두 의미가 있고, 의료정책 실행 주체들에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정책 및 구조 변경을 야기하는 잦은 개혁정책은 조직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낳고, 결코 지속가능한 변

---

<sup>15</sup> McCoy, D., Coronavirus has exposed the dangerous failings of NHS marketisation, Tue 5 May 202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y/05/coronavirus-nhs-marketisation-pandemic?CMP=Share\\_iOSApp\\_Other](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y/05/coronavirus-nhs-marketisation-pandemic?CMP=Share_iOSApp_Other), (최종방문일 2021. 2. 1.).



화를 이루기 어렵다.

특히 영국은 최근에 있었던 2012년 개혁 당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개혁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의 조직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어진 영국 내 재정 악화로 인해 공중보건 재정도 크게 축소되었다. 한때 NHS는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었으나, 지난 10년간 NHS 예산 삭감은 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영국 공중보건 시스템의 양적,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의 제도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및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된 것은 양국이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 분야보다는 복지 분야에 오랜 기간 치중해왔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업무 전문성이 약했다는 점이 이번을 계기로 다시금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전염병통제 전담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제2차 관제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 마련되었다.

영국이 새로 창설한 ‘영국 보건 보안국’의 명칭 내 안보 개념 **security**을 적용한 것은 이제 전통적인 위협뿐만이 아닌 감염병 위협도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간절하다.

현재 코로나19 종식보다는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정치가 개입이 되면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중심이 흐트러진다. 2021년 11월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논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역학 정보를 공유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확진자들의 연령과 증상, 중환자 정보 등을 공개하여 의미 있는 토론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 법무부의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한 유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육군 측이 항소한 사실을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이로 인해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비록 법무부가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망인(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취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런 트랜스젠더의 군대 복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3심제를 포기한 점에서 더욱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사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사전에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따라서 절차만을 보여준 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며, 정의를 사수한다는 법무부는 이를 포기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0월 13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하여 더욱 논란

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첫째, 대통령과 법무부의 잘못된 인권 논리의 적용이다.** 이른바 성정체성은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헌법 36조에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법에서도 남군과 여군만이 군대에 근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대통령과 법무부는 ‘성소수자의 인권’의 논리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상대적 또는 자의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과 법무부는 일부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적용한 것에 동조한 것이다. 잘못된 인권 논리는 결국 다수를 위협에 빠트리고 당사자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오늘날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특정적으로 이념화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진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 인권과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성별 자기결정권’의 자의적 인권은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신체, 교육, 주특기 등의 전문성을 무시하였다.** 우리나라 복무제도는 병사들은 남성만이 의무 복무하고, 여성은 간부로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부는 병사들보다 엄격한 신체 조건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아울러 교육과 주특기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전후방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부는 이런 군대의 특성을 전혀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복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 정서상 허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남군이었던 간부가 어느 날 여성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과연 본인 어머니, 이모 또는 여자 조카들이랑 함께 사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민감하고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강제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발상이다.

**셋째, 법무부가 법원의 심각한 법적 오류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전지법 오영표 부장판

사는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인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변희수 전 하사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별 예외로 인정하며 유족의 소송승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남군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당사자인 변 전 하사가 사망하자 유족이 소송 승계를 받으면서 급여 청구 등의 문제로 소송의 취지가 옮겨졌다는 것이다. 소송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전지법 오영표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역 취소 판결이 되어 죽은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없기에 원칙적으로 이 재판은 각하(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급여 청구 문제 등을 끌어와 소송 승계를 인정했다. 급여 청구 문제 등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역 취소 판결과 연관시켜 소송 승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넷째, 이번 사태의 근원적 책임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성정체성의 혼란 문제를 숨기고 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의 선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명백히 일종의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성정체성의 혼란은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망인의 경우 2017년 입관 당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입대 후 약 한 달 뒤부터 자신의 성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호르몬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군대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매우 엄격하다. 더욱이 트랜스젠더는 지금도 정신병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며,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사안이 발생 시 전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전차병이라는 임무 수행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정신적 불안정성은 큰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당연히 전역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군의 전역 조치는 합법적이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신의 성정체성 혼란 문제를 숨기고 입대한 망인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성전환 비용의 부담감과 해당 지휘관의 대응문제이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며 근무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하여 의식주의 모든 비용을 담당한다. 이번 판결로 성전환하겠다는 간부나 병사에 대하여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미군의 경우도 이 비용 문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성전환자 복무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연방법원에서도 이것이 합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성전환 복무자 근무 여부에 대한 정책을 올해 안에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분명히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을 보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유는 우리나라 군대의 조건과 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군 지휘관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망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성전환 수술 전, 해당 대대장 및 군단장 등에게 모두 보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망인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지휘관들은 오히려 망인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를 크게 키운 책임을 군단장 등의 지휘관들이 져야 마땅하다. 정해진 법과 규정에 근거한 지침 대신 이와 반대되는 개인적 의견을 망인에게 표명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 CREDO

##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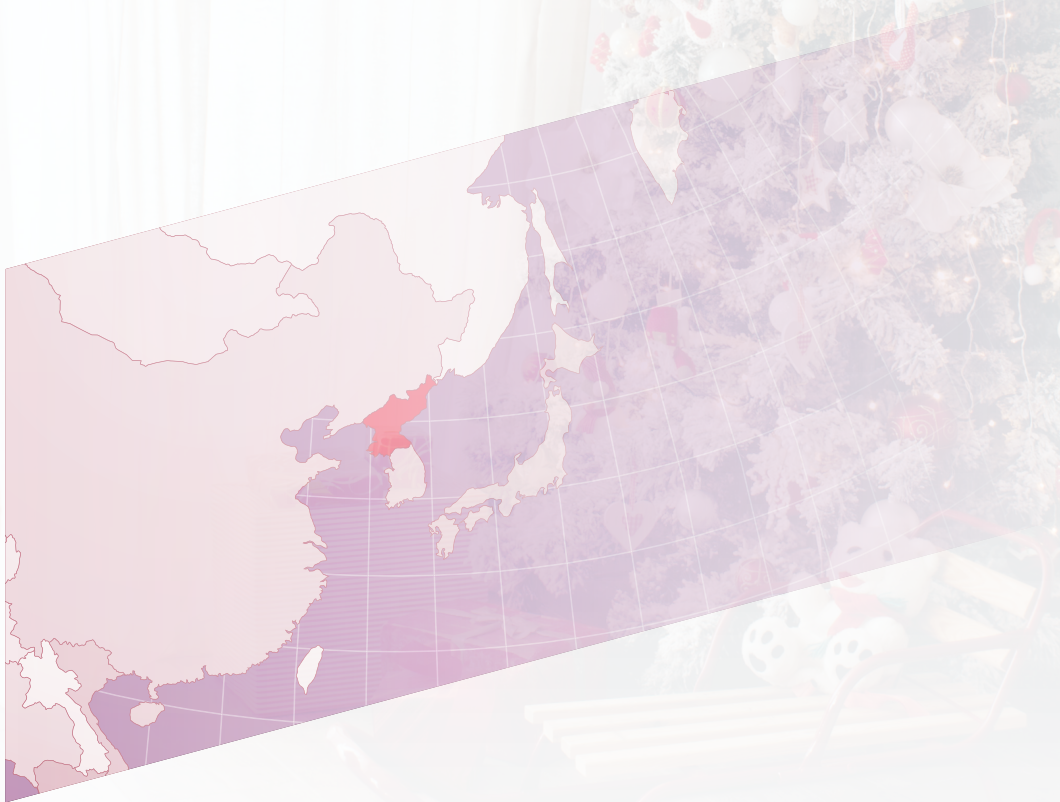
---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전환기 정의 구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탈북민의 정착 지원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제 사회의 인도적 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으로써 무력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한예정 크레도 상근변호사

현재의 국제법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 국제 조약인 유엔 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항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수권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sup>1</sup>

한편으로, 유엔 헌장 제7장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근대국제법이 성립한 이후, 한 국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그 사태를 복구할 목적으로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집단이 타국에 무력 행사를 하는 ‘인도적 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영토적 일체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개입이 아닌한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여겨졌다.<sup>2</sup>

1 이들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무력 행사금지 원칙이 UN 헌장이라는 조약상 의무를 넘어서 이제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2 이미 17세기 초 휴고 그로티우스는 어느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대우하는 방식이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잔악한 경우 다른 국가들은 간섭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 체제의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수권이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유엔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Uniting for Peace Resolution**와 같은 특별조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 사회가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법적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인도적 간섭’이 적법한 무력 행사로써 여전히 가능한지 논의가 국제적 법치주의 원리와 맞물려 대두되었다.

유엔 헌장 제정 이후 1971년 인도의 동파키스탄 개입이나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 1979년 탄자니아의 우간다 개입 등은 주로 자위권의 행사나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1978년 프랑스의 자이레 개입은 피개입국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진 시기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였다.

1994년 르완다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후투족이 약 100여 일간 르완다 인구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을 집단학살 **Genocide** 하는 만행이 벌어졌으나, 유엔과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의 나라들이 집단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르완다 지원 평화유지군의 군사력과 권한 강화에 실패하며 인도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아, 집단학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3</sup>

한편, 1998년 3월 코소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코소보 시민을 대상으로 내린 공격명령으로 인해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이 당시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 19개 회원국들은 세르비아의 조직적 인종

<sup>3</sup> 대부분의 인권 단체들은 르완다 제노사이드를 통해 약 80만명에서 100만명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르완다 정부는 이 학살에서 100일 동안 1,174,0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1일당 1만명, 1시간당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당한 것과 같다. 집단학살은 르완다 대통령이 비행기 하강 중 격추된 다음 날인 1994년 4월 7일 시작되어 군인과 경찰, 민병대가 재빠르게 투치족 핵심 인사와 온건파 후투족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검문소와 바리케이드를 세워 르완다 민족 식별 카드를 사용해 투치족을 살해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1994년 7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르완다 집단학살은 이후 집단학살, 인권범죄, 전쟁범죄 등의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탄생하는 데에 자극제가 되었다.

청소로 인해 코소보에 닥칠 엄청난 비극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78일 동안 무력을 사용하였다.<sup>4</sup>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한 인도적 개입으로써의 무력 사용은 불법이지만 정당하다고 *illegal but legitimate* 주장하면서,<sup>5</sup> 국제법학자들의 논의도 뜨거워졌다.

나아가, 북한은 3대에 걸친 정권 세습 및 체제 유지를 위하여 장기간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sup>6</sup>로서, 지도자의 갑작스런 유고 또는 권력 내부의 이상 동향으로 인한 정치·군사·외교·경제적 통제력의 상실, 군 쿠데타, 내전, 주민 봉기, 대량 난민 발생, 대량 아사,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통제력 상실, 대규모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는 급변 상황이 언제든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인도적 목적으로 무력을 동원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인도적 간섭을 지지하는 국제법학자들은 어느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잔악 행위와 박해를 하며 그 정도와 방법이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일 경우, ① 대규모의 인명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기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② 인명의 상실을 종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군사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 ③ 최종적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sup>4</sup>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78일간 유고 내 코소보 지역 거주 알바니계 주민에 대한 인종탄압 종식의 명분으로 유고에 대한 공중 폭격을 하였다. 이는 30만명 이상의 대량 난민을 발생시킨 인권 탄압 종식을 위한 인도적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의해 행해진 최초의 간섭이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간섭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sup>5</sup> 이 당시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 작전이 인도적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하며(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e humanitarian aim), 해당 목표에 대한 시간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경우(strictly limited in time and scope to this aim)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 역시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 무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sup>6</sup>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정권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의 수감자, 북한을 탈출하는 자, 기독교인 및 기타 체제 전복적 영향을 가져오는 자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하였고,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사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이동의 자유, 시장경제행위, 대안 마련 등의 기회들을 박탈하면서 대량아사 사태를 유발했고, 핵무기 개발 등에 소요되는 국방비와 최고지도자의 사치품 구입에 국가의 자원을 비대칭적으로 사용하며 의도된 행위로써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일반적 인도적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실정 국제법 규정상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의 범위와 해석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모든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기타 헌장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 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지 않는 인도적 개입의 경우 무력 행사가 유엔 헌장 해석상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한편으로, 인도적 간섭이 근대 국제법의 성립 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국제관습법을 통해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도적 간섭론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현행 국제법 체계상 어느 국가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인도적 개입을 실행하는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인도적 의도를 표명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적 개입 결정이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강대국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통일된 국가관행 역시 존재하지 않아 인도적 개입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의해 금지된 무력 행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인도적 무력 개입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들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장기화 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현행 국제법상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과정에서 무력 사용 금지는 정치적 독립성이나 영토적 일체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무력을 금지시키는 의도가 아니라 약소국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



인 무력 사용 금지의 취지였으므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금 지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에 관한 통일된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인도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 역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강대국뿐이며, 대상국은 약소국에 한정되게 되므로, 강대국의 이해 관계를 위해 정치적 해결책으로 인도적 개입을 남용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많은 인도적 간섭이 불법이지만 정당하다(illegal but legitimate)고 여겨진 까닭은 국제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사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 질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말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에 국제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자성으로, 국제 사회는 21세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지 않고 집단살해나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국제 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할 ‘권리’에서 ‘의무’ 또는 ‘책임’으로 전환되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 R2P)의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 참고 문헌

오병선,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통권 제115호), 대한국제법학회, 2009.12.

백범석, 이서희, 인도적 무력개입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논의. 인도법논총, 39권,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9. 1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11판, 박영사, 2021. 2.

홍현익,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 · 방안, 세종정책연구, 29. 세종연구소, 2013.

탈북민 수기 시리즈 4

# 돌격대에 바친 나의 청춘

김보빈 작가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출생하였다. 생계를 위해 탈북을 감행하였다는 이유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3년의 형을 마치고 2012년 6월 탈북에 성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2남 2녀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일러스트 최수민 작가



나의 청춘은 길지 않았다.

약속된 6개월의 돌격대 근무가 끝난 2000년 4월, 나는 어대진 소금밭에서 철수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모처럼 돌아온 집은 이미 어머니가 지켰던 옛집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동생들은 생활 전선에 뛰어나느라 분주했고, 두 언니는 출가외인이 되어 집을 떠났다.

큰 언니는 알콜 중독자인 남자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고, 둘째 언니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사귀던 남자와 그냥 동거하며 살고 있었다. 여동생은 학교 졸업도 못하고 결국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다.

그래도 나는 가족들이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있어 주어 고마웠다.

하지만, 다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으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소금밭에서 겨우 돌아온 나는 집의 평안과 위로를 느낄 틈도 없이, 바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으로 떠나야만 했다.

## 아사자로 넘치는 역전



한 주 정도면 도착한다던 기차 여행이 15일이나 걸렸다. 기차는 정전이 되어 달리다 서다를 반복하였고, 서고 또 섰다.

기차가 서는 곳마다 굶어 죽은 시체들이 가득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끝에 채일 정도로 짐짝처럼 널려 있었다. 북한 사람들이 당한 고난의 대행군 현장을 정말 실감 나게 목격할 수 있었다.

평양역에 가기 전 평의선과 평라선이 갈라지는 간리역(間里驛)에서 열차가 3일을 머물게 되면서 수많은 꽃제비들을 보게 되었다. 차창으로 매달려 오는 눈빛이 저마다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간절했다. 그것은 살겠다는 열망의 눈빛이었다.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흠쳐서라도 먹으리라는 너무도 불쌍한 형상이었다.

또한, 열차가 간리역에서 3일 밤낮을 머무는 동안 매일 새벽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도 어찌보면 저들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역시 먹고 사는 게 힘든지라 마냥 그들을 걱정할 수만도 없었다.

## 고속도로 돌격대

보름 밤낮을 지나 마침내 남포시 영광군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정작 도착한 현장은 너무나 한심하였다. 이번에는 남녀 침실이 따로 있었지만, 용품이 부족해 매일같이 도둑질을 하며 해결하였다.

돌격대는 대대 2개, 중대 4개, 소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나는 새별대대 1중대 1소대로 소속되어 돌격대 생활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평양남포고속도로는 완공된 상태였고, 남포항에서 평양까지 들어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드디어 산을 허물고 돌을 깨서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돌격대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척박한 곳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노래였다. 노래 가사를 생각하며 미래를 꿈꾸고 현실의 참담함을 잊으려고 했다.

“눈 비속을 뚫고 헤친 나의 이 배낭,  
흙을 지고 돌을 지고 몇 만 리더냐?”

나의 돌격대 생활 현실을 반영한 이 가사가 좋아 늘 불렀다.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이겨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따로 있었다.

‘믿고 싶어요’ 라는 노래였다.

“믿고 싶어요. 우리의 고난 극복 된다고  
믿고 싶어요. 우리의 앞날 밝을 거라고  
오늘의 한끼. 또 한끼 건디기 어렵지만  
장군님 바라보면서 혁명을 조입니다.  
믿고 싶어요. 우리의 고난 극복된다고  
믿고 싶어요. 우리의 앞날 밝을 거라고  
오늘의 하루 또 하루 건디기 힘들지만  
장군님 바라보면서 이 한 몸 바칩니다.”

이 당시 북한 땅의 청년들은 장군님을 생각하며 육탄이 되어 당과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삶을 살았고, 나 역시 그 청년들 속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현장을 선택하였고, 청춘과 미래를 당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내 마음 안에 굳게 서 있었다.

‘열심히 하라고 독려해줘야 하는 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는 도무지 영문을 몰랐다.



### 사관장 언니의 비밀

소대원에 갓 입소한 때부터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오랫동안 돌격대 사관장을 맡고 있는 나이 많은 언니였다. 사관장 언니는 많은 경험을 하고 소대원들을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사관장 언니가 나를 부르더니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사관장 언니는 나에게 다 필요없다고 하였다. 필요없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언니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여 이야기 해주는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본인은 입당하였으면서, 왜 남은 못하게 하는 걸까?’하며 많은 오해를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오해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지 말아라.”

어느 날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밤낮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나를 대대장이 불렀다.

대대장은 나에게 앞으로 일을 하지 말고 대대부 식모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남의 밥을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입당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대장에게 나는 조선노동당원이 되려고 하니 식모 일은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관장 언니를 찾아가 입당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그녀의 가슴 속에 숨긴 비밀을 조곤조곤 말해주었다.

“돌격대를 나와서 입당을 하려면 내 몸과 마음을 다 받쳐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정말 친동생 같아서 말을 해주는 거야. 이 언니는 이미 희망이 없어. 설령 입당을 했을지라도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조직 생활은 갈수록 더 몰아붙일 텐데, 그 힘든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는 거니?”

사관장 언니는 돌격대와 당원 생활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었다. 정말로 놀라웠다.

나는 대대장이 앞으로 일을 하지 말고 대대부 식모를 하라고 했다고 말하자, 사관장 언니는 지금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아마 언니도 대대부 식모부터 시작하였던 모양이다. 언니는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대대장은 결국 나더러 자신의 여자 노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놀랍게도 사관장 언니가 나에게 알려준 말은 모두 사실이였다.

## 탈영을 결심하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렸다.

누구보다 온 여름과 가을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이게 다 헛된 꿈이었단 말인가?

누구보다 앞장서 소대의 일을 도맡아 하고, 물품 조달 비용을 스스로 벌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항구에서 생선을 나르던

나였다. 추운 겨울날 살얼음이 낀 소금국에 밥을 말아먹는 힘든 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가면서도, 돌격대를 통해 입당을 하는 큰 꿈과 희망을 길렀는데,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수많은 돌격대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배고픔에 옷을 팔아 빵을 바싹먹고 남의 물건을 훔쳐 국수 한 그릇과 바싹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데, 대대장이라는 작자와 간부들은 나이 어린 여성 돌격대원들에게 자기의 애욕을 채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분노와 치욕을 느끼며 갑자기 실망의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19살이었던 나는 결국 돌격대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도망치는 일도 쉽지가 않았다. 기차에서 먹을 식사 한 끼도 준비를 못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14일 동안 훔쳐 먹고 빌어먹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여 집에 도착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돌격대에서 탈영한 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내 인생을 그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개의치 않고 비판서를 쓰고 사상 투쟁회에 나서면서도 다시는 돌격대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집에 돌아오니 시집 간 두 언니는 장마당에서 하루살이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다. 아기를 등뒤에 업고, 머리 위에는 음식을 담은 대야를 이고….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살고 있는 언니들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언니들이야 말로 매일 같이 아기를 들쳐 업고 삶과 죽음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알콜 중독자인 큰 형부와 일하기 싫어하는 둘째 형부를 보자니 화가 났고, 언니들을 보자니 불쌍했다.

### 셋째 언니의 죽음과 새로운 계획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나는 앞으로는 남은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긴 병치레 끝에 임종이 가까운 셋째 언니가 나를 찾았다. 언니는 청진으로 장사하러 떠나는 나에게 임연수 한 마리만 사오라고 부탁했다.

임연수는 셋째 언니가 좋아하는 생선이

었다. 나는 사오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했지만, 막상 장사를 떠나자 철길과 도로가 폭설로 다 막혀 교통수단이 다 멈췄다. 그래서 15일 남짓 청진역에서 노숙하다가 보름만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도착하니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

집 문을 조용히 열어 보니, 불도 없는 캄캄한 방 가마목에 혼자 쪼그려 앉아 있던 여동생이 나를 보자 울기 시작했다. 아빠도 남동생도 셋째 언니도 안 보이자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동생은 나에게 왜 이제야 왔냐며, 셋째 언니가 나를 기다리다가 아빠 품에 안겨 죽었다고 한다. 셋째 언니는 23세의 어린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빠와 남동생은 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큰 아빠 집으로 먹을 식량을 구하러 100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고 한다.

그러나,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아빠와 남동생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나를 보는 순간 신발도 못 벗은 채 나를 껴안으며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다. 돌아왔으니 됐다. 네 엄마가 먼저 갔어도 이렇게 마음이 안 아팠는데...” 하

며 우셨다. 셋째 딸을 먼저 보낸 채 넷째 딸도 소식이 끊기자 죽은 줄만 알고 계셨던 아빠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 늙어 버리셨다.

남동생도 누나가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나 때문에 죽은 것만 같고, 좀 더 일찍 돌아 왔다면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지 않았을 것만 같아 나의 눈에도 죄책감의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장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장사를 한다고 해도 이윤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한번 장사를 하고 돌아오면 겨우 옥수수 10킬로와 소금 2킬로 정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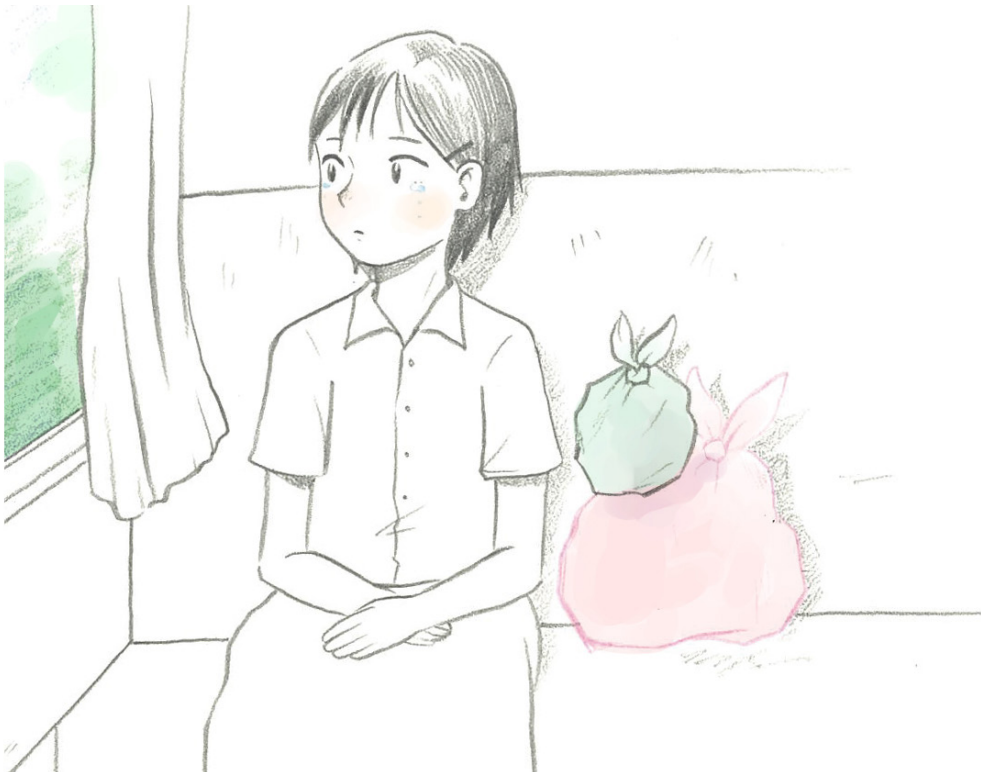
장사를 나가려면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열차 지붕 위로 물건을 날려 싣고 올라타 위험한 열차 행방을 해야 했다. 열차 지붕에 올라타고 가다 보면, 이따금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면 3,300볼트 고압 전기에 사람이 튀어 죽어 나간 것을 보곤 했다. 여덟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3일을 가는 때도 있었고, 한 주가 넘어가는 때도 있었다.

기차, 자동차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하러 떠났지만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을 돌아보면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었다. 시집간 언니들의 아픔과 홀로 남은 아빠. 출가하지 못한 여동생,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남동생을 보며 결국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그동안 모은 돈을 언니에게 주고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사놓고, 아빠에게 한 달만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하고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결국 친구의 숙모를 통해 두만강을 건넜다.

나의 탈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탈북민 수기는 다음호에서 계속 됩니다.



# CREDO

## *Interview*

---

사단법인 크레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세상을 더욱 가치있고 살만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열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희망을 쏘아 올리는 사람들, 언제나 청년인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 한국성평화연대를 소개합니다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 만들게 된 취지가 무엇인가?

한국성평화연대를 만들었을 때가 2018년입니다. 한국성평화연대를 만든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티테제’에서 가지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반대 세력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긍정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성평등’이라는 가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평등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해야 했었습니다. 평등이 그 자체로 목적성을 띠다보니 성평등의 사용이 한계점을 넘어 오히려 개개인에게 폭력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성화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언어의 부재입니다. 성별에 관련한 모든 담론을 구성하는 언어가 이미 오염되고 왜곡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성평등,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2차가해, 여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비롯한 수많은 언어들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설명하기에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말할 수 있는 개념어와 활자들로 새로운 성담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성평화연대에서는 성평등과 성차별로 남녀를 바라보지 않고, 성평화와 성위기 혹은 성화합과 성과괴로 상황을 바라보며 설명합니다. 또한 가정 모델을 가부장제라고 설명하지 않고, ‘가분담제’라는 개념어로 설명합니다. 성담론의 대전제를 구성하는 개념어의 전환으로 갈등의 언어가 아닌 화합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성평화 대상을 수여받고 있는 최인호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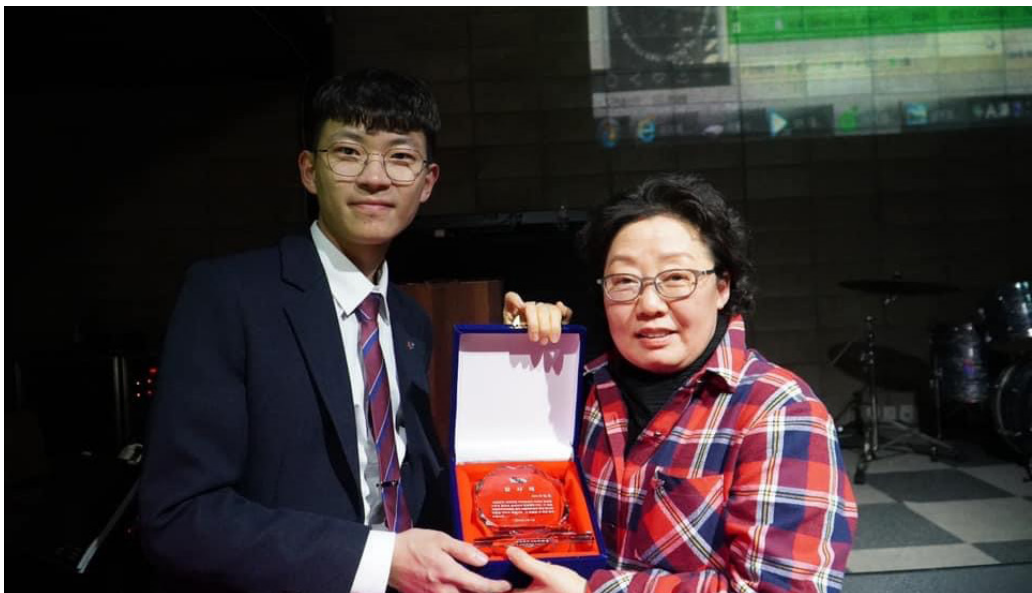
## 어떻게 만들어 왔나?

한국성평화연대라는 집단 조직을 만들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성평화라는 가치관을 알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어설프지만, 그때는 정말 더 어설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진심이 충만했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임에 감사했습니다. 피켓, 포스터, 카드뉴스를 만들어 활동했었는데 당시는 구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나,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하나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의견이 분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성가치관을 정립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것을 메인 의제로 들지 등 각종 의견에

대한 각자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단톡방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 중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 공동체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성평화기본체계”를 만들고, 성평화 로고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부와 본부 체계를 만들고 각 지부별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투표로 선출해 개인 역량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진심으로 조력하고 응원해주는 동지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부별 매달 정기 모임과 단체 총괄 행사인 정기 총회를 연도별로 기획하며 우리의 단합과 의지를 한국성평화연대 구성원 각자가 가시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인원은 초기 20명이 40~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1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평화 대모상을 수여받으신 오세라비 작가님

## 무엇을 해왔나?

이후 한국성평화연대는 교육정책국을 따로 개설해서 성평화 가치관을 구성하는 개념

어들로, 오염되고 왜곡된 주요 성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커리큘럼화하여 교육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부장제, 유리천장, 독박육아, 성인지감수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비동의간음죄, 젠더와 성주류화 등에 대해서 성평화적 견해들을 만들어 공표합니다. 공표된 견해들은 각 지부로 전달되어 지부의 정기모임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사회에도 성평화라는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 전국 연합 성평화 동아리, WALIH(왈리)**We Always Live In Harmony**를 조직하였습니다.

초기 WALIH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세종대, 인현고, 송내고 등을 비롯하여 총 11개 학교로 시작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동아리 회장들이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여 성평화 커리큘럼을 따라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동아리였습니다. 당시 인현고의 WALIH 동아리 회장을 맡은 학생이 최인호군이었습니다. 이후 최인호군과 함께 교내 페미니즘 사상 주입과 전교조 정치 교사들의 편향된 사상 주입을 막고 스스로 학생을 수호하자는 목표로 ‘전국학생수호연합’이라는 학생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성평화연대는 학생 사회에서 성평화 가치관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속에서도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왜곡된 성인식으로 잘못 자리잡은 허위 미투와 수사 관행으로 너무나 쉽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도와 성평화 가치관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를 통해 데이터들을 취합해 남성가해자론, 여성피해자론의 허구 담론의 모순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숭고함과 남성과 여성의 성화합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현재 성별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위대한 역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공격적이며 당장이라도 벗어 던져야 할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평화는 남성과 여성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로 기록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사명을 띄고 있는 터전이자 설명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랑스러운 남성과 여성,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목표일 것입니다.



한국성평화연대 지부원들

이것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성별을 평등하게 맞추다보면 정의로운 세상이 구현될 것’이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넘어, 성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별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양성‘평화’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을 다른 별개의 진영으로 두는 전제 위에 서로가 평등해져야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지만, 양성평화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진영에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남성과 여성을 멀어지게 만들거나 자긍심을 폄훼하는 별개의 다른 진영으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수호’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결국 인류의 성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문명 사회를 이룩한 선진국을 필두로 페미니즘과 PC주의 광풍때문에 성별을 탈피하는 것을 넘어 성별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성별인 남성과 여성이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져간다면, ‘정체성 난민’들이 넘쳐나게 되어 국가는 이들을 수



용하여 관리하는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넓어져야 개인이 확대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축소되면 축소될 수록 공권력이 비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아직은 미비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소집단이지만, 대한민국에서부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성평화! 좋아! 조아! 조화!



한국성평화연대 간부들



# CREDO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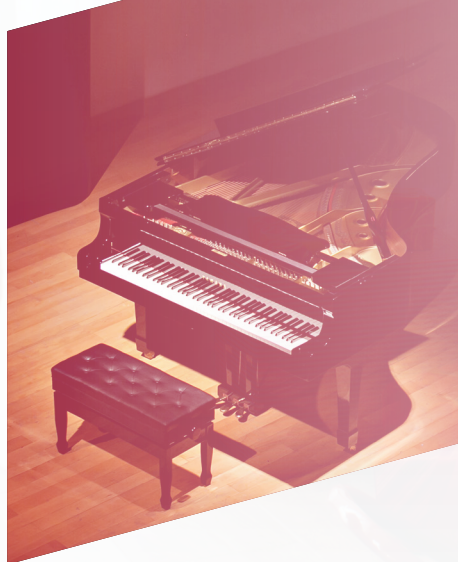
---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추구하는 진, 선, 미의 가치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크리스마스에는 ‘나홀로 집에(Home Alone)’

정희재 음악감독,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에는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한다 해도 끝도 없을 것 같지만,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영화 ‘나 홀로 집에’의 음악 역시 그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는 1990년 크리스 콜롬버스 **Chris Columbus** 감독의 영화로 맥컬리 컬킨 **Macaulay Culkin**의 순수하면서도 엉뚱하게 똑똑한 아역 연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맥컬리 컬킨은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어린 컬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했던 부모님의 욕심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40세가 넘는 중년 남자가 된 그

는 현대 미술 장르의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영화로의 재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둑 해리 역으로는 처음에 로버트 드 니로 **Robert De Niro**에게도 제안이 갔었지만 거절했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1990년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캐스팅, 유머성, 그리고 음악에까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 ‘클래식’과 같은 영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 집에’의 메인 타이틀 **Main Title** 곡은 ‘Somewhere in My Memory’내 **기억 속 어딘가**입니다.

영화 전체의 사운드트랙의 시작을 여는 ‘Somewhere in My Memory’를 잘 살펴보면, 악기 구성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떠올리게 되는 악기의 음색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종소리의 질감을 가진 글락켄스피엘 **Glockenspiel**의 멜로디는 겨울의 캄캄한 밤에 일어나는 일이 갖는 신비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냥 밝지만은 않은 오묘함이 또 우리의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주는 뭔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호기심을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파트가 뒤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약간의 미스터리한 느낌을 넘어 조금은 으스스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호기심 뒤에 무언가가 가려져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곡은 흐름에 따라 목관과 금관, 그리고 전체 관현악기의 풍성함을 보여주기도 하며, 합창단에서 어린이들이 메인 멜로디를 맡아서 노래하고 그 뒤로 썰매의 벨 소리가 깔리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관현악의 구성과 특징있는 악

기 음색들을 사용해서 시작에서는 호기심어린 캐롤로, 그리고 끝은 잔잔한 뮤직 박스의 느낌으로 자장가처럼 마무리하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풍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곡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는 계절, 깊어가는 밤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 모두 수고 많았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럴 자격 있으니까요.



##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작품들



최지인 Choi Comtemporary Art 대표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랑, 가족, 파티, 캐롤 등 추운 한겨울 이지만 웬지 따뜻한 기분이 드는 크리스마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12월에는 이런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두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하면 가족들끼리 모여 따뜻한 저녁을 먹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는 또 다른 가족인 강아지도 종종 떠오릅니다.

요즘은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와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아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서 이제 가족에 빠질 수 없는 귀여운 친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과 닮은 아주 귀여운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후식 작가님의 강아지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안경을 낀 강아지가 앞발을 들고 서있는 이 작품은 보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멈추질 않습니다.

웬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이 강아지는 몸의 색도 알록달록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재질로 크리스마스 파티의 장식품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끼리의 사랑도 있지만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연인들이 입김을 불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로맨틱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로맨틱한 날 함께하기 좋은 사랑에 빠진 순정남을 소개해 드립니다. 터

프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 웬일인지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는 김원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크리스마스에 사랑 밖에 모르는 이 ‘로망띠크 가이’와 함께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찰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사단법인 크레도 후원 안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단법인 크레도의 활동들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크레도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01

**크레도 홈페이지 후원 메뉴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 단체후원 등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02

**사단법인 크레도 명의의 계좌로 직접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03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정기후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 청년단체 후원 안내

사단법인 크레도는 우리 청년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지 않고 눈을 들어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고 헌신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여러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꿈과 비전에 기꺼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이들을 소개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참인권청년연대

PC 전체주의, 문화막시즘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시청, 구청 등에 찾아가 항의 시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동성애 공산주의 주입교육인 민주시민교육법과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김선규**

**E-MAIL** kkk9600@naver.com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450-951617 김선규**